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1. 5.

1. 제안이유

○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약 자인 여성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중화장실 등 설치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양변기 출입문 상·하단부를 제외하고 양변기 좌·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설치 사항(안 제3조 제1항 제4호).
- 나.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책임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양변기 출입문 상·하단부를 제외하고 양변기 좌·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 사항.(안 제3조 제2항)

3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,

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,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,
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